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18854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 경과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br>(제출자) | 발의일<br>(제출일) | 경과   |
|--------------------|---------|----------------|--------------|--|
| 대기환경보전법<br>일부개정법률안 | 2213894 | 박홍배의원          | 2025.11.4.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br>전체회의(2026. 3. 24.) 상정 후<br>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br>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br>심사소위원회 회부 |
|                    | 2215592 | 정부             | 2025.12.24.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br>전체회의(2026. 3. 24.) 상정 후<br>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br>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br>심사소위원회 회부 |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4. 7.)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

(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활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

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제35조의3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  
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  
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1. ~ 3. (생략)
- ② ~ ⑤ (생략)

-----  
-----  
-----  
-----  
-----  
-----

---.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  
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  
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  
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